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84

발의연월일: 2020. 7. 9.

발 의 자: 박영순·문진석·이개호

황운하・임호선・이용호

강준현 • 박성준 • 김윤덕

김회재・박 정・이성만

이상민 · 조승래 · 이학영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바이러스-19의 확산으로 한 학기 수업이 모두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 역시 급감하여 학생들은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고 있음.

그런데 등록금의 감액·면제 및 환급의 근거와 그 사유는 교육부령에서 정하고 있고,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·면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나,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등록금의 면제·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 서,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 하여도 등록금을 면제·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0항 ·제11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0항) 중 "설치·운영 및 제9항의 행정적·재정적 제재"를 "설치·운영, 제9항의 행정적·재정적 제재, 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·감액 및 제11항에 따른 등록금 환급 기준"으로 한다.

-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.
- 1. 학생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
- 2. 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등록 금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
-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다.
- 1.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
- 2.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
-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	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
원회) ① ~ ⑨ (생 략)	원회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⑩ 학교의 설립자・경영자는
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
	거나 감액할 수 있다.
	1. 학생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
	한 경우
	2. 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	<u>경우</u>
	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	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
	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
	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
	<u>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<u><신 설></u>	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
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환급할
	<u>수 있다.</u>
	1.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
	2.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
	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	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
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, 제3 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.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 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 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·운영 및 제9항의 행정적·재 ·운영, 제9항의 행정적·재정 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적 제재, 제10항에 따른 등록금 의 면제·감액 및 제11항에 따 른 등록금 환급 기준-----